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정이유서

2023. 12.

금 융 위 원 회

1. 가상자산의 범위 (안 제2조까지)

가. 제정이유

-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정(2023. 7. 18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
-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

나. 제정 내용

-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
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전자채권, 모바일 상품권
 -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은행의 예금 토큰
 -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(Non-Fungible Token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가상자산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구성 등 (안 제4조)

가. 제정이유

-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

나. 제정 내용

-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, 위원의 임명·위촉 등을 규정(제4조)
 -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함
 -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,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, 7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, 교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예치금의 예치·신탁 및 관리 (안 제5조)

가. 제정이유

- 이용자의 예치금*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

*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, 매매의 중개, 그 밖의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함

-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*

* (이용자 예치금) 약 4.0조원, (이용자 가상자산(원화환산액)) 28.4조원 ('23.상반기 기준)

- 현재는 「특정금융정보법」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적용

- 동 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필요

-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예치금의 이용(운용) 대가인 예치금이용료 또한 이용자에게 지급될 필요

<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관련 규정 >

- (예치금)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(법 제8조)
- (가상자산)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(법 제7조제3항)
 - 신고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요구
 - 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%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

나. 제정 내용

-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관리방법을 정하고, 사업자 파산선고 등의 경우 예치금 지급절차, 예치금이용료의 이용자 지급 등 규정

- ①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,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규정(제5조제1항)
- ②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국채·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*(제5조제3항 등)
 - * 운용대상은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자예탁금의 운용대상에 관한 내용을 준용
- ③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용자 예치금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를 가상자산사업자의 합병, 영업양도 등으로 제한(제5조제5항)
- ④ 사업자 파산선고 등 예치금의 이용자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 및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다음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(제5조제6항부터 제8항)
- ⑤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,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(규정 제7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이용자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,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선고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가상자산 보관,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[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]

가. 제정 이유

- 이용자의 예치금*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

*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, 매매의 중개, 그 밖의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함

-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*

* (이용자 예치금) 약 4.0조원, (이용자 가상자산(원화환산액)) 28.4조원 ('23.상반기 기준)

- 현재는 「특정금융정보법」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적용

- 동 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필요

-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예치금의 이용(운용) 대가인 예치금이용료 또한 이용자에게 지급될 필요

<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관련 규정 >

- (예치금)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(법 제8조)
- (가상자산)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(법 제7조제3항)
 - 신고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요구
 - 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%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

나. 제정 내용

-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, 해킹·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

- 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(콜드월렛)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%이상으로 규정(제6조제1항, 규정 제9조제1항)
- ②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보안기준을 구체화*(제6조제2항)
 - * ①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공시, ②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·동량 실질 보유, ③위탁받은 가상자산은 전부 콜드월렛에 보관, ④재위탁 금지 등
- ③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·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해킹, 전산장애 등 사고의 범위 구체화*(제7조)
 - * 접근매체의 위·변조사고, 계약체결·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,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사고 등
- ④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% 이상을 준비금 등으로 적립*
 - * 다만, 동 금액이 30억원(원화마켓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5억원)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적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,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(안 제9조)

가. 제정이유

-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마련

나. 제정 내용

-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정보 공개방법 및 기간을 구체화함(제9조)
 -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,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(다만,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판단)
 -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(White Paper)*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판단
- *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·유통량계획,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등이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등 금지 (안 제10조)

가. 제정이유

-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구체화

나. 제정 내용

-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 금지와 관련하여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특수관계인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함(제10조제1항)
-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,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(제10조제2항)
- 법 제10조제5항각호에 따라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고, 그 내역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가상자산 임의적 입·출금차단금지 (안 제11조)

가. 제정이유

-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의 입·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

나. 제정 내용

-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, 법원·수사기관·국세청·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,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·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입·출금 차단이 가능(제11조제1항각호)
-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·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이용자에게 이에 따른 입·출금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규정함(제11조제2항및 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이용자 가상자산의 입·출금이 체계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며,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입·출금이 차단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이상거래 감시 (안 제12조)

가. 제정이유

- 가상자산시장을 개설·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

나. 제정 내용

-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(제12조)
 -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
 -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
 -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,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9.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(안 제16조, 제17조)

가. 제정이유

-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구체화함

나. 제정 내용

-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기간 및 회수,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(제16조)
-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(제17조)
 -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과징금 제도가 합리적·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명확히 규정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0. 부당이득 산정방식 및 과태료 (안 제20조, 제21조)

가. 제정이유

-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(부당이득) 산정방식을 규정
-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설정

나. 제정 내용

-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(제20조)
 - 미공개중요정보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 등 행위 유형별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(별표 2)
-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별로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함(제21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